

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4년 8월 30일

· 회부일자 : 1994년 8월 30일

3. 개정이유

□ 제안이유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내용과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내용이 상치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의사정족수

- 심의회 개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

○ 조직(위원)

- 당연직인 도의 국장 7인을 4인으로

- 경제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내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4인으로

○ 기능

- 국토이용계획 입안, 자문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·변경에 대한 사항 (시장,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)으로

○ 명칭변경

-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도시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

5. 검토의견

본도의 등 조례와 상위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의 상치되는 불합리 조문을 정비
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 : 1. 충청북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.